

공시송달공고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불법시설물
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
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83조 및 행정절
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 년 10 월 18 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공 고 명 : 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16. 10. 18. ~ 2016. 11. 01.(15일간)
3. 송달할 서류의 종류 : 불법시설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(붙임)
4. 공고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, 게시판
5. 무단점유 공유재산 현황(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)

재산의 표시		행위자	점유현황	비고
마전동	979-28번지	미상	불법시설물(지주대)	

6. 공고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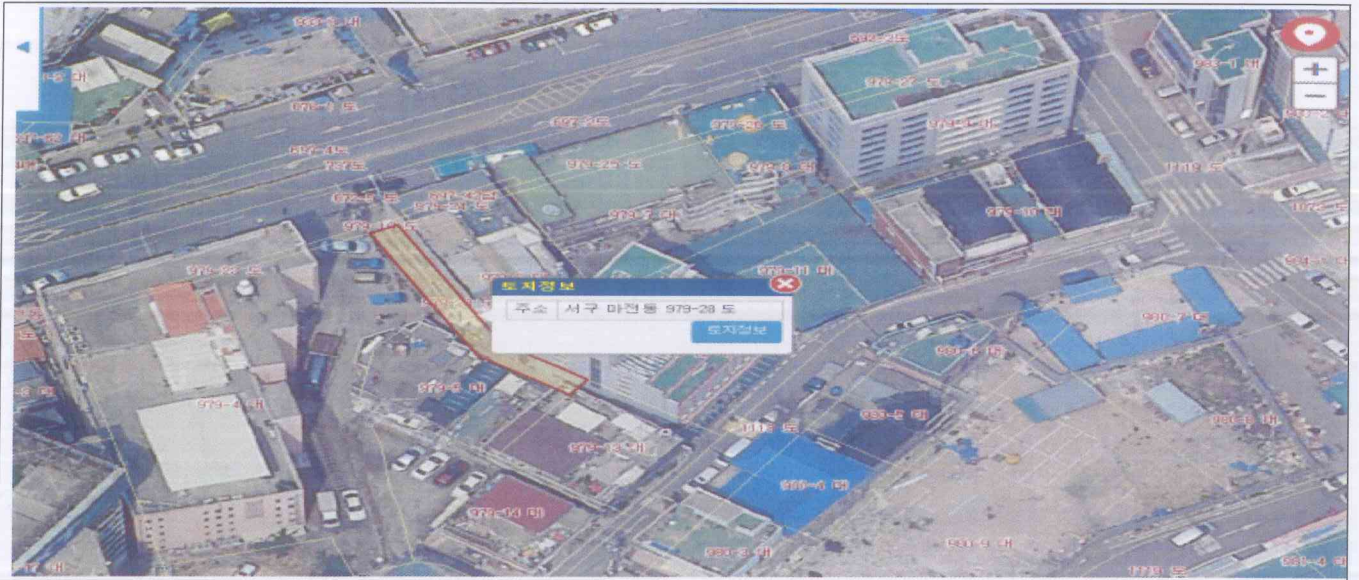
-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(철거)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내에 미이행시 행정대
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행정대집행후 소요된 비용이 귀하에게
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동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
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
을 알려드립니다.

7. 기 타

-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
된 것으로 같음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032-560-4482)으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현장 사진 및 위치도

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제2016-1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2016년 10월 17일,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시설물을 2016년 10월 20일까지
자진철거 하도록 계고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, 공유재산의 관리 및 도시미관 유지,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
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16년 11월 1일**까지 반
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83조 및 『행정대집
행법』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
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
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83조에 따라 귀
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
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79-28	불법시설물 (지주대)	1개	불법시설물 강제 철거

2016 년 10월 18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